



차이나

CHINA Industrial Policy Brief

산업정책 브리프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中, 전략광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및 공급망 안전조사 제도 강화

■ 중국 상무부는 전략광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체계와 산업망·공급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잇달아 발표

* **전략광물 이중용도 품목** : 국가안보와 첨단산업, 공급망에 중요한 전략광물 중 민간과 군사 분야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중국은 <광물자원법>에 따라 36종의 국가급 전략광물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갈륨, 게르마늄, 흑연, 안티몬, 희토류 등은 대표적인 이중용도 전략광물로 수출통제 등 별도 관리하고 있음

※ 공고 제26호(6.24) : 전략광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위법행위 신고제도(2026년 7월 1일 시행)

※ 공고 제24호(6.22) : 산업망·공급망 안전조사 시행 방법(2026년 6월 22일 시행)

- 이번 조치는 희토류 등 전략광물 수출통제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국의 공급망 제한조치에 대한 조사 및 대응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

■ <전략광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위법행위 신고제도> 주요 내용(공고 제26호)

- 전략광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위법행위 신고 범위에 대해 개선·보완
 -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전략광물 이중용도 품목 수출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기존의 무허가 수출뿐만 아니라 허가 회피, 우회 수출, 불법 기술이전, 제재 대상과의 거래 등 총 13개 유형의 위법행위로 세분화
- ① 허가 없이 전략광물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행위
 - ② 허가 범위, 조건 또는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전략광물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행위
 - ③ 수출이 금지된 전략광물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행위
 - ④ 개조·분할 등 방식으로 전략광물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 ⑤ 제3국(지역)을 경유하여 전략광물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를 우회하는 행위
 - ⑥ 투자, 교류, 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기술을 국외로 불법 이전하는 행위
 - ⑦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대리, 운송, 금융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⑧ 타인의 수출통제 회피 또는 위법행위를 교사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 ⑨ 거래제한(통제) 명단에 등재된 수입업체 또는 최종사용자와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하는 행위
- ⑩ 허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수출통제법상 위험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행위
- ⑪ 수입업체 또는 최종사용자가 제출한 확약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⑫ 외국 정부의 전략광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관련 방문·현장검증 요구를 임의로 수락하거나 수락을 약속하는 행위
- ⑬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 및 포상제도를 통해 위법행위 감시를 강화**

- 상무부 온라인 신고 플랫폼(<https://aqygzj.mofcom.gov.cn>) 및 신고센터(010-12369)를 통해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대로 확인되어 법 위반 적발에 기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자진신고 제도**

- 기업이 자체적으로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상무부에 자진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며, 자진 신고는 향후 행정처분 시 감경 또는 면제의 참작 사항으로 활용됨
- 이번 공고는 기존 수출통제법상 위법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자진신고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수출통제의 집행력과 기업의 자율적 준법관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됨

■ <산업망·공급망 안전조사 시행 방법> 주요 내용(공고 제24호)

- 상무부는 2026년 3월 시행된 <국무원 산업망·공급망 안전규정>의 후속 조치로, <산업망·공급망 안전조사 시행 방법>을 제정하여 공급망 안전조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조사 대상에 외국 국가·지역·국제기구와 외국 조직·개인을 포함하도록 규정

- **조사 개시 대상**

- 상무부는 외국 정부·지역·국제기구, 해외 조직 또는 개인의 행위가 중국 산업망·공급망 안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급망 안전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조사 대상에는 외국 정부의 수출규제, 차별적 거래제한, 정상적인 거래 중단, 기타 정상적인 시장원칙을 저해하는 조치 등이 포함됨

- **조사 방식**

- 상무부는 필요 시 자료 제출 요구, 질문서 발송, 청문회 개최, 현장조사, 해외 현지 조사, 기술감정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확보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

•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조치

- 조사 결과 공급망 안전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하다고 규정
- 국가·지역·국제기구 대상 : 수출입 제한, 국제서비스무역 제한, 특별비용 부과, 반외국제재법 등에 따라 관련 조직·개인을 반제재 명단에 등재하고 제재조치 시행
- 외국 조직·개인 대상 : 중국과의 수출입 제한, 중국 내 투자 제한, 중국 내 조직·개인과의 거래 및 협력 제한, 관련 인원의 중국 내 취업 및 체류·거류 자격 제한 또는 취소 등
- 중국 내 조직·개인 대상 (조치 미이행 시) : 정부조달 및 입찰 참여 제한, 관련 상품·기술의 수출입 및 국제서비스무역 제한, 국외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제공·수신 제한, 출국 및 중국 내 체류·거류 제한 등

• 중국 정부 및 관영매체 평가

- (상무부·신화사) 전략광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위법행위 신고제도는 〈수출통제법〉에 근거한 제도로, 수출통제 집행력을 높이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아울러 다수 국가가 유사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도 국제 관행을 참고해 관련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강조
- 기존에도 신고 처리 실무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는 신고 범위·방식·처리절차를 명확히 해 전략광물이 불법적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무역하는 기업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시사점

- 이번 두 제도는 중국의 전략광물 통제정책이 단순한 수출허가 관리에서 공급망 전반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보 중심의 관리체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 수출통제 위반행위의 신고 범위가 기술이전, 우회수출, 물류·금융 지원 등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와 수출통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
- 제3국 경유 우회수출 등 수출통제 회피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운영 및 거래 과정에서 중국 수출통제 규정 준수 여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자진신고 제도가 공식 도입됨에 따라 위반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자진신고 여부가 향후 행정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자료원 : 상무부